2019년도 인천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인천광역시에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2019년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5일간) 인천문화재단을 대상으로 2016년11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관실에서는 인천문화재단의 지적사항 12건(본 처분10건)에 대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으며,
- 감사기간 중에 발굴한 수범사례에 대하여 산하 전 기관에 전파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 감사결과 내역

	처분현황(건)		행 ?	정 상 3	상 조 치 (건) 재정상조치(천원)		신 분 상 조 치 (명)							
구분	계	본 처 분	현 지 처 분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계	추징 회수	환급 감액	계	징계	훈계	기관 경고
À	12	10	2	10	6	3	1	1,180	1,180 (추징)	ı	1	-	ı	1

[※] 현지처분은 "자체감사 통합메뉴얼(감사원)" 의거 현지조치사항으로 관리하되, 행정상조치 건수 제외

2019년도 인천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 【수범사례】

수범사례 1 우리미술관 운영

□ 우리미술관 현황

위	치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192번길 일원								
위 탁	처	인천광역시동구									
위탁기] 간	최초위탁 2015.0	최초위탁 2015.09.23. ~ 현재								
용	도	동구 지역의 주기	동구 지역의 주거공간 밀집지역에 위치한 작은 미술관(전시관, 교육관 등)								
특	징	한국문화예술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은미술관 조성사업 선정으로 추진								
공	간	전시관(공방)	야외공터	레지던스(곳방)	스튜디오(공동창 고)	교육관(희망키움					
면적(m²)	67.69	38	37.82	31.42	129.57					
		사무실, 작업실, 공터, 화장실	공터	화장실, 부엌, 다락방	소규모 공간	사무실, 화장실					
용	도	I F									

□ 사업개요

- 문화소외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비용, 시간,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상설 미술관 운영
- 생활 속에서 시각예술 체험을 통해 문화 수요에 부합하고 문화예술에 대 한 일반인의 관심과 친밀감을 높여주는 공공문화시설로 운영

□ 추진실적

- '2018년도 최우수 작은미술관'선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상 수상
- 2018 작은미술관 전시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선정(국가보조금 40.000천원)
- 지역 설화 '괭이부리 호랑이'로 우리미술관 어린이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0,000천원)

- 예술성과 지역성을 고려하여 예술가 또는 주민과 함께하는 전시회 기획및 개최(2018년 12회)
- 지역 어린이, 청소년, 주부, 노인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2018년 88차시)
- 지역의 공가를 레지던스(창작문화공간 금창/만석)로 조성하여, 지역에 대한 이해력과 창의력을 갖춘 시각예술(커뮤니티아트 포함)분야의 작가 3인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입주작가 프로그램을 운영
-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와 우리미술관이 '지역대학 연계 아트 프로젝트' 운영(2018. 3.~9.)
- 우리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발표를 겸한 '2018년 괭이부리 마을 자치'를 개최

□기대효과

- 우리미술관을 3개 거점공간(시민향유거점, 참여형예술문화거점, 예술창작 거점)으로 운영하여, 지역 내 효과적인 문화예술의 확산을 도모
- 인천 동구의 문화공간인 우리 미술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는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마련

2019년도 인천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 처분목록(10건)

					처	분 내	역	
NO	분 야		제 목	관련부서	행 정 상	재 정 상 (천 원)	신분상	비고
1	인 사	-	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관 조성 (설계용역) 추진 부실	■	주의·개선			
2	예산·조	직	인천음악플랫폼 조성 및 관리 부적정	□팀 ◇팀 ■	시정·권고		기관경고	
3	기 부 금	L	모집한 기부금 운영 및 정산 소홀	□팀	시정·주의			
4	회 계		하자검사 미실시	◇팀	시정·주의			
5	회 계		선금지급에 관한 사항	"	주 의			
6	회 계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66	시 정	1,180 (추징)		
7	예 산	ŀ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팀	주 의			
8	총 무	-	법무 · 노무 자문 관련 규정 미비 등	"	개 선			
9	재 산	<u> </u>	재산 및 물품 관리 소홀	◇팀	시정·개선			
10	재 산	Ļ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업무 소홀	0	시정·주의			

[일련번호 1]

인 천 광 역 시 주 의 · 개 선 요 구

제 목 ■ 기획전시관 조성(설계용역) 추진 부실

기 관 명 인천문화재단

관계부서 □팀, ■

혀 황

O ■ 기획전시관 조성(2018. 1.19)

- 장 소 : 인천 중구

- 사업비 및 재원 : 당초 180백만원(변경 : 400백만원) / 출연금

-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

• 천장 제외한 일반 부문 : (주)▽▽사무소

2018. 1.31. : 설계 계약(2018년 2월 6일~3월 5일)

· 천장 부문 : ★★

2018. 7.19. : ■ 기획전시관 구조설계용역 계획

2018.10.26. : ■ 기획전시관 구조설계 용역 계약 잔금 지급

O 인천문화재단 기간제근로자(정원외) 현황

(단위: 명)

예산별	총계	재단 본부	예 술 지원팀	생 활 문화팀	공 간 문화팀	인천이트 플랫폼	연습 공간	청 년 창작소	교육지 원센터
인 원	22	3	1	2	5	5	2	2	2

내 용

1. 설계용역 성과품 납품 전에 대금 지급

「인천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제67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완성된 성과품 납품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인천문화재단 ■에서는 '■ 기획전시관(구, 인천문화재단 사무실) 조성 계획사업'으로 예산사업(총 180백만원/ 출연금)을 추진하였다. (주)▽▽사무소와 2018. 1.31. 설계용역계약(2018. 2. 6.~3. 5.)을 체결하였다.

2층 천장 철거(2018. 2.22.)후 기존 목조 천장을 드러나게 설계하기 위해 2018. 3. 6. 1차 기간연장(2018. 3. 5.~3.27.)하였다. 그러나 철거과정에서 건축물의 구조안전문제 발견하여 기획전시관 조성 설계용역 중단(■-129: 2018. 3.20.)하였다.

그 이후 구조 안전진단 기술용역, 본 건물을 등록문화재 추진검토 등을 시행 후 용역재개 -781 : 2018.11.22.)하여 2차 기간연장(2018.11.29.~12.28.)하였다.

①본부 ◇팀은 연말 지출서류 조기마감(2018.12.14.) 및 2018년 출납폐쇄 (2018.12.28.)를 공지하였고, ■ 기간제 근로자 C는 용역설계 성과품이 아닌 건축에 한정된 약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2018.12.11. 대금 전액(15,000천원) 지급을 기안후 ①본부 ◇팀에 의뢰하여 2018.12.27. 지출되었다. ①본부 ◇팀의 확인결과 사실상 서류 제출은 2018.12.28.까지 발생하고 있어 협의를 통해 완성된 성과품을 확인후 지출의뢰 했어야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C는 설계용역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근대건축물 도입을 위한 인테리어 설계를 목적으로 기획전시관 벽체 및 천장 부분철거공사(■-40: 2019. 1.25.)를 추가적(9,460천원 집행)으로 실시(2019. 1.30.~ 2.19.)하였다.

설계용역에 추가 반영사항이 있다면 3차 설계용역 연장으로 처리했어야 하는데, 당초 2018.12.28.까지 제출되었어야 할 설계용역서는 2019년 1월 벽체 등의 철거공사후의 내용도 설계에 반영하면서 2019. 5. 2. 파일 전송 및 종이문서로 제출되었다.

설계용역 계약(천장 제외한 일반 부문) 추진경과

- 2018. 3. 6. : ■ 기획전시관 조성 관련 설계 연장(1차 : 2018. 3. 5.~3.27.) 보고

(2층 천장 목구조물 파손상태 확인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 2018. 7.25. : 🔳 기획전시관 등록문화재 지정 추진 관련 자문회의

- 2018.11.22. : ■ 기획전시관 설계 계약 일시정지 해지 및 계약변경(2차:2018.11.29.~12.28.)

- 2018.12.11. : 대가 지급 기안(미완성품 납품) → 2018.12.27. 지출

- 2019. 1.25.: 근대건축물 도입을 위한 인테리어 설계를 목적으로 기획전시관 벽체 및 천장 부분철거공사

- 2019. 5. 2. : 최종 설계용역서 파일 전송 및 종이문서

연말 지출서류 조기마감을 이유로 성과품 납품 전에 대가 지급 의뢰를 하고 설계용역 대가 지급이후에도 근대건축물 도입을 위한 인테리어 설계목적으로 기 획전시관 벽체 등의 철거공사를 진행하여 이미 종료된 설계용역에 반영하는 등 계획적인 업무 추진에 소홀하고 회계질서 문란을 초래하였다.

2. 잦은 담당자(기간제근로자 포함) 교체로 설계용역 성과품 부실

[표 1]과 같이 ■ 기획전시관 조성 담당자는 사업기간 20개월중 4회 교체(기 간제근로자 1명 포함)되고 공석으로 관장 D가 담당하기도 하였다.

구분 담당자 근로자별 담당 기간 비고 1 정규직 2018. 1.17. \sim 2018. 2.22. Α 2 정규직 $2018. \ 2.23. \sim 2018. \ 9.15.$ В 3 C 기간제근로자 2018. 9.16. \sim 2019. 2.28.

[표 1] ■ 기획전시관 조성 담당자 변경현황

4	공석(관장 : D)	_	2019. 3. 1. ~ 2019. 4. 4	
5	E	정규직	2019. 4. 5. ~ 현재	

한편 2층 천정의 목구조물 화재 및 파손에 대한 보강의 필요성과 2층 지붕 구조를 노출하여 근대건축물임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하기 위해 천 장구조설계용역(2층 목조 활용)은 ★★에서 추진하였고 2층 기존 목재천장에 에 어콘 설치를 미포함하여 성과품을 제출(■-705: 2018.10.26.)하였다.

2층 천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을 담당한 (주)▽▽사무소가 제출한(2019. 5. 2.) 설계용역 최종본에는 목재천장에 하중을 발생시키는 에어콘 3대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천장부분과 나머지 부문 설계로 구분하여 발주한 설계용역의 결과물은 상충되었다.

■ 기획전시관 조성은 잦은 담당자(기간제 근로자 포함)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 및 책임성이 결여되었다.

3. 자격요건이 미흡한 기간제 근로자를 기획전시관 조성 담당자로 업무부여

「인천문화재단 인사규정」제3조 제5호 및 제5조 제1항에 "직종"이라 함은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 등으로 분류하고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 등의 한시직원을 명시하고 있고「인천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제5조 제4항에는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원 외로 인력을 둘 수 있다.

또한「인천문화재단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칙」제 2조 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동 규정 제4조 제4호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 기획전시관 조성(사업비 180백만원) 당시 ■에는 총 3명(관장, ◈◈ 직 1명, 일반직 1명)이 근무중이었다.

①본부 □팀에서는 2018. 9. 5. ▦팀 내부사정으로 업무진행이 어려워 ■ 기획전시관 조성 담당자 정규직 문화행정 3급 B를 ▦팀으로 인사발령하였다.

이에 ■(총 3명에서 총 2명으로 감소 : 관장과 ◈◈직 1명)에서는 결원을 메우고자 □팀에 기간제 근로자를 요청(■ -578 : 2018. 9.12) 하였다. □팀에서는 [표 2]와 같이 '■ 기간제 근로자 계약사항 보고'(□-2456:2018. 9.17.)에서 2명의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계약하였다.

[표 2] 정규직 공석(2018. 9. 5. 발령)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업무내역

업무명	변경전		비고	
■기획전시관 조성	문화행정 3급 B (인천문화재단 근무	2018. 9.18. ~12.31.	기간제근로자 C	2019.2. 28.까지 연장
■ 기획전시	12년 경력)	2018. 9.13. ~12.31.	기간제근로자 F	

'기획전시관 조성 및 문화재등록의 효율적 준비 및 진행'을 목적으로 채용 (2018. 9.18.~2019. 2.28.)된 기간제 근로자 C(2018. 2월 대학교 졸업. 건축학 전공후 2018. 7. 6.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은 천장 설계(★★)와 일반 부문 설계용역(주식회사 ▽▽사무소)의 성과품에 대한 대가 지급 및 철거 공사 등의 업무를수행하였다.

기간제 근로자 C는 설계용역 성과품 납품 전에 대가 전액지급 기안후 의뢰하였다. 또한 설계용역마감일 이후에도 근대건축물 도입을 위한 인테리어 설계를 목적으로 기획전시관 벽체 및 천장 부분철거공사(■-40 : 2019. 1.25.)로 9,460천 원을 추가적으로 집행(2019. 1.30.~ 2.19.)하기도 했다.

정규직 문화행정 3급 B(인천문화재단 근무경력 12년)의 업무인 기획전시관 조성은 설계용역 감독 및 철거공사 진행 등으로 전문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 요한 경우이므로 대신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업무 특성에 적합한 학력과 경력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채용했어야했다.

그러나 약 6개월간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 C는 건축학 전공자이지만 경력이 없어 업무에 미숙한 업무보조 수준이었으나 단독 담당자로 지정되어, 성과품 납품 전에 대가 지급, 설계용역의 결과물의 상충, 설계용역 종료 후 설계용역에 반영을 위한 철거를 시행 등 계획성 없는 업무진행 등으로 책임성 결여 및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주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담당자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책임성 저하 및 동일한 회계질서 문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기간제 근로자중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는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책임성 등을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학력, 경력 등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정하여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인천광역시 기관경고·시정요구·권고

제 목 ΔΔΔΔΔΔ 조성 및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문화재단

관 계 부 서 □팀, ◇팀, ■

혀 황

O 건물현황

- 위 치: 인천 중구

- 물건내역: 대지 1,157.4m²(약350평) / 건물연면적 739.99m²(약224평)

건축 면적: 558.68m²(약170평)

- 매입가격 : 금2,499백만원(총 조성금액 2,905백만원)

- 전소유자 : ■법원

- 건 축 일 :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 2001년(그 이전에 건립되었던 것으로 추정)

- 특 징 : 1899년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대한천일은행 인천지점(현, 우리

은행 인천지점)이 1920년 현 부지로 이전한 역사성(은행건물은 멸실)

O 추진경과

- 2017년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예산 9억원 확보 : 2016.11.

사업계획 보고(재단 이사회) 및 인천시 승인 : 2016.12.

- 조직개편으로 ●팀 신설 : 2017. 3. 1.

- 매입 계획 이사회 승인(재단 이사회) : 2017. 3.

- 2017년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추경(2,005백만원) 동의안 제출: 2017. 5.26.

- ■법원과 매입 계약 체결 : 2017. 6. 5.

- 2017년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추경(2,005백만원) 동의안 확정 : 2017. 6.28.

-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 2017. 8.

- 환경개선공사(▲▲▲▲▲▲ 조성) 설계 및 공사 착공 : 2017.10. ~ 12.

- 인천문화재단 청사 이전 : 2018. 1. 3.

- ▲▲▲▲▲▲ 개관 : 2018. 1.23.

내 용

1. 의회의 출연 동의안 확정 전에 건물 매입계약 실시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하고 있고,「지방자치법」제39조 제1 항 제2호 및 제127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안 편성을 하고 지방의회는 예산의 심의·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문화재단 ○본부 ◇팀이 ▲▲▲▲▲▲ 조성을 위해 매입 예정인 건물의 매입가는 2.499백만 원으로 기확보된 900백만원(출연금)으로는 부족하였다.

이에 리모델링 등의 비용을 포함한 2,055백만 원을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서 증액을 요청하였고 인천광역시(ㅁ과)는 인천문화재단 출연 제안서를 2017. 5.26. 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인천문화재단 ○본부 ◇팀은 의회의 출연동의안 확정(2017. 6.28.)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2017. 6. 5. 계약 체결하고 매각대금을 2019. 8. 4.까지 3회에 걸쳐 분납(고시이자율 포함)하기로 하였다.

-인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확정 및 매입 추진경과-

- 2017. 5.26. :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제안(시 ㅁ과)

(출연금:2,055백만원)

- 2017. 6. 5. : ■법원과 매입 계약 체결(이자포함한 잔금은 3회 분납으로 2019. 8. 4.까지)

- 2017. 6.13. :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 2017. 6.28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확정(원안동의)(정례회)

이에 대한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인천문화재단 ①본부 ◇팀은 매입예정 건물이 이사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은행 당시 건물 멸실후 다른 건물이지만, 부지가 갖는 역사성을 감안하여 매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고 의견을 제출하 였다.

해당 건물은 ■법원(재산관리관) 소유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2회 유찰되어 2017. 6. 5.(감정평가 기간종료로 인한 변경된 매각조건이 발생됨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소멸)까지 수의계약 기간이 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인천문화재단 ◇팀은 동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 확보가 필요하나 수의계약 기간 최종일까지는 불가하여 추경경정예산 확보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 지급일 전 까지 추가경정예산의 배정 및 교부가 불확실하여 2019. 8. 4.까지 3회에 걸쳐 분납(고시이자율 포함) 또는 일시 납부 추진을 검토하였다.(④ 조성사업계획 보고: ◇-916/2017. 5.30. 대표이사 결재)

결국 추가경정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 매입(2,500백만 원 상당)계약을 함과 동시에 추가경정예산 확보의 차질 발생에 대비하여 분납계약 (2년에 걸친 잔금의 지급)에 따른 이자 지급을 하겠다는 재정지출에 부담이 되 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그 이후 원안대로 출연금이 확보되어 일시금으로 지불하였으나 의회의 권한인「지방재정법」의 출연 동의와「지방자치법」에 따른 예산금액의 심의·확정의 선행절차 없이 기 출연금(900백만원)을 가지고 건물 매입(2,499백만원)을 위해 이자율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분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방재정법」의 의회 의결과「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의 심의·확정의 선행 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회계질서 문란을 초래한 것으로 수의계약 기간 종료이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입을 하였어야 했다.

한편 상기와 같이 매입한 건물의 활용계획은 ▲▲▲▲▲▲ 조성과 인천문화재단(당시 ■ 소재) 사무실 이전이었다. 해당 건물의 리모델링후 공간활용을살펴보면 건축연면적 739.99㎡중 ▲▲▲▲▲▲ 조성에 사용면적은 약 18.5%로

써 ◇◇◇◇◇(33 m²), ◆◆◆/●●●(78.6 m²), ◇ ◇ ◇ ◇ ◇ ◇ ◇ ◇ (25 m²)이며 나머지는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되었다.

"▲▲▲▲▲▲ 세부운영계획(2018~2020)수립(안)(図-524: 2018. 10.30.)"에는 "◈◈◈은 다목적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음향·조명시설 및 관련 집기가 없어 ① ② 3간이라 할 수 없고 방음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사업진행 어려움이 있어서 방음설비 구축, 조명시설 개선, 장비(프로젝터, 스크린, 마이크, 스피커, 음향장비) 구입과 설치 관련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으나 2019. 4. 5.에 ▲▲▲▲▲▲ 업무는 축소·이관되고 ◇ ◇ ◇ ◇ ◇ ◇ ◇ ◇ ○ ● 회의실로 사용 중으로 사실상 ▲▲▲▲▲▲ △ △ ○ 인천문화재단의 사무공간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건물 매입후 리모델링하여 2018. 1. 2. 개관한 ▲▲▲▲▲▲▲▲▲ 12 건물 연면적의 약 18.5%를 차지했고 방음시설 조차없이 미비한 상태였으며, 개관 이후 약 15개월 뒤에는 주로 인천문화재단의 사무공간으로 활용 중으로 건물의 매입 시 선행절차 위반 및 리모델링 등의 예산1)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한 건물의 불명확한 활용계획으로 ▲▲▲▲▲ 조성 목적 달성은 저조하였다.

2. 조직개편 사전절차 이행없이 팀 전원 발령

「인천문화재단 정관」제33조 제1항 사무 부서의 조직, 분장업무 등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하고, 동 정관 제38조에는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시행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인천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제3조·제4조 제2항 제3호에는 재단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코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조직 중에는 ♡본부에 ●팀, □팀, ■

¹⁾ 매입후 재단 청사(일부) 및 ◇◇◇◇◇ 조성 세부내역(총 2,905백만원) : 부지 및 건물매입비(2,499백 만원), 리모델링비(309백만원), 설계비·공간조성 및 이전 등 97백만원

팀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 제7조 제1항 및 제16조의3에서 재단의 업무는「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인천문화재단 정관」에서 규정한 사업 등을 참고하여 대표이사가 부서별로 분장하며, ●팀의 분장 사무는 ☑ 확장에 따른 중·장기 사업의 추진, ▲▲▲▲▲▲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시설 운영, □□□□□ 확충 운영 관련 조사·연구 업무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인천문화재단은 2017. 3. 1.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팀은 총 3명(겸직팀장과팀원)으로 구성하고 2017. 6. 5. 건물 매입후 총 조성액 2,905백만원(건물매입비 2,499백만원 포함)으로 ▲▲▲▲▲▲▲▲

그러나 '2019년 ○○○○ ○○○○발간 사업 관련 내부 회의결과(図-34 : 2019. 3.11.)'를 보면 G 대표이사, H 사무처장, I ⑤본부장(팀장 겸직) 참석자 3명이 ▲▲▲▲▲ 발간사업 중지, 기존 진행한 ◇◇◇◇◇ 2년차 사업은 진행하고 신규 ◇◇◇◇◇사업은 중지하도록 결정하였다.

사유는 ▲▲▲▲▲▲ 및 ◇ ◇ ◇ ◇ ◇ ◇ 발간업무는 2018년 조성된 ▲▲▲▲ ▲ ▲ 및 ◇ ◇ ◇ ◇ ◇ * 발간업무는 2018년 조성된 ▲▲▲▲ ▲ ③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2019년 재단의 계획 및 정책방향은 현재까지 미정이므로 ▲▲▲▲▲▲ 관련 내용 전면 재검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이후 ①본부 □팀에서는 직제 변경절차없이 인사명령(2019. 4. 4.)으로 ● 팀 직원 3명 전원을 다른 업무로 발령조치하여 2019. 4. 5. 이후 ●팀은 직제만 남았다. 또한 2019. 4.12. 사무처장 주재 본부장단 업무이관 관련 회의에서 [표 1]과 같이 업무 등을 이관하도록 하여 사실상 2018년부터 2년 계속 사업인 '○ ○○○ 연구발간' 업무만 존속하고 있다.

[표 1] ●팀 전원 발령(2018. 4. 5. 이후) 업무이관 내역

당 초		이 관	2019년 예산	비고
○○○○연구발간	-1 -1 +1 =1	⊿ 팀	72,300	
	담당인력 총 2rd	▶팀	100,000	2019년 신규사업
구매자료	총 3명		_	소장자료 이관

①본부 □팀에서는 2019. 2.25. 최병국 대표이사 취임이후 인천시에서 '문화재단 → 위원회'2)를 구성(2019. 2.26.~ 8.25.)하여 재단의 조직개편 등의 혁신방안 논의 기능을 부여함에 따라 조직개편은 → 위원회의 개편안이 나올 때까지보류되었다. 따라서 2019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기인사 및 부서간 인력배치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판단하였다고 의견제출하였다.

또한 인사발령 이전에 인천광역시(n과)와 협의하여 직제는 있되 인력과 잔여사업을 타 부서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고 의견제출하였으나 증빙은 없다.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 및 시장의 승인을 거쳐 신설된 ●팀(조직개편 2017. 3. 1.)을 직제 변경 절차없이 대표이사 등 3명이 2019년 재단의 계획 및 정책방향은 현재까지 미정이므로 ▲▲▲▲▲▲ 관련 내용 전면 재검토한다는 내부회의 이후에 팀 전원을 발령조치함으로써「인천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에따라 재단의 직제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 및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이사회 등의 권한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한편「인천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제7조 제1항에는 대표이사가 부서 별로 분장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동 규정의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부서별 업무 분장)의 개정을 통해 가능하고 이를 위해 이사회의 의결 및 시장의 승인이 필요 하다.

²⁾ 인천시(ㅁ과)에서 시민과 지역문화예술인들이 함께하는 인천문화재단의 역할 확립을 위하여 시, 시의 원, 지역 문화예술인, 문화재단 이사 등으로 구성후, 조직 및 인사 개편안 등의 체계적인 혁신안을 마 련하고자 운영

더욱이 ①본부 □팀은 '문화재단 ▷ ▷위원회'의 조직 및 인사 개편안이 논의 중임을 인지하였고 논의중인 개편안도 최종 이사회를 통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1월 개관한 ▲▲▲▲▲▲▲ 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 전원을 발령조치한 후 축소한 ▲▲▲▲▲▲ 업무를 2개 팀으로 임의적으로 이관함으로써 예산 투입하여 조성한 ▲▲▲▲▲▲

3. 2018년 구입한 쇼쇼쇼쇼쇼쇼 때때자료 관리 소홀

인천문화재단 ①본부 ●팀(2017. 3. 1. 신설)에서는 2018. 1. 23. ▲▲▲▲▲▲ ▲ 개관이후, ▲▲▲▲▲▲ 조성 및 운영 ▲▲▲▲▲▲ 공연 활성화 지원업 무를 추진하였다.

이후 ▲▲▲▲▲▲ 조성업무는 2019년 8월 이사회에서 당초 편성된 2019년 예산(297,300천원)은 2018년 12월 이사회(172,300천원)에서 축소되었고 2019. 4. 5. 인사발령으로 사실상 ●팀이 해체됨에 따라 2019. 4.12. 사무처장 주재 본부장단 업무이관 관련 회의에서 [표 1]과 같이 ●팀 업무를 이관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인천문화재단 ○본부 ●팀은 2018년 ▲▲▲▲▲▲▲ 자료구축을 위해 '◇◇◇◇◇ 기증 요청자료 평가심의(●-287 : 2018. 6.28.)' 등 3회에 걸쳐 내부 위원 또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에 보관할 자료를 선별하였고 [표 2]와 같이 ⑩⑪자료(도서, 악보, CD, DVD, 음반 등)를 경매 구입, 공개 구입 등의 방식으로 33,835천 원 상당금액을 지출하여 ◇◇◇◇◇에 보관하였다.

[표 2] 2018년 ▲▲▲▲▲▲ 자료 구입내역

(단위:처원)

구분	종류별	수량	구입금액	비고
	총액	197	33,835	
	단행본	87	2,912	
—	공개	40	14,350	
구입	경매	54	15,073	
	항온항습기	1	1,500	경매 구입 등 고가품 보관용
기부	음반	16	-	

* 수량 : 항온항습기 미포함

그러나 ●팀은 2019. 4. 5. 인사발령으로 다른 팀으로 전원 발령 조치되면서 ◇◇◇◇◇의 자료는 ■(별도 건물)으로 해당 ⑩⑪자료를 이관하여 소장하도록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기관경고] ①「지방재정법」의 지방의회 출연 동의 및「지방자치법」의 예산금액의 심의·확정 전에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불명확한 사업목적으로 투입된 예산이 사업목적 달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계획단계에서 신중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② 직제변경 선행절차 이행없이 임의적으로 팀 전원을 인사발령 하는 등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보관중인 ⑩⑪자료의 인계인수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투입된 예산의 효과성 및 업무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 ▲▲ 세부운영계획(2018~2020)수립(안)(●-524 : 2018. 10.30.)" 등을 참고하여 보관중인 ⑩⑩자료의 활용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인 천 광 역 시 시 정·주 의 요 구

제 목 모집한 기부금 운영 및 정산 소홀

기 관 명 인천문화재단

관계부서 □팀

현 황

O 인천문화재단 기부금 모금 및 집행내역

(2019. 8월말 기준 / 단위 : 천원)

구분	세부내역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7월
	순수기부금	450,195	200,374	140,158	26,880	10,190
모금	조건부기부	285,845	35,000	68,000	53,145	9,700
	계	736,040	235,374	208,158	80,025	19,890
	순수기부금	235,363	125,931	37,887	-	_
집행	조건부기금	222,679	35,000	60,137	47,842	9,700
当 % 	기부금사업 및 수수료 등	36,194	7,028	370	346	138,380
	계	494,236	167,959	98,394	48,188	9,838
활용실격	부금 모금액 및 석 명세서의 월금액		90,151	199,915	231,752	241,804

내 용

1. 순수 기부금 사업운영 소홀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9조 제1항·제 3항에는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기부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 금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문화재단 정관」제23조의2 제1항에는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 등의 목적사업 및 재단의 운영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 할 수 있다. 또한「인천문화재단 기부금품 관리 및 운영규정」제2조 및 제3조에는 기부금을 순수 기부금과 조건부 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인천문화재단 ⑤본부 □팀에서는 순수 기부금을 운용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및 제2항에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 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8조 제1항에는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인천문화재단 정관」제13조 제1항 및 제17조에는 이사회는 재단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재단의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한다.

순수기부금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일반사업과 동일하게 다음연도 사업계획 취합분과 기업협력사업 예상분을 산출기초로 하여 순수기부금의 세출예산을 편성후, 여유자금 등은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여 수익을 창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문화재단 ○본부 □팀에서는 다음연도 세출예산에 순수기부금을 편성하면서 다음연도 사업계획 취합없이 산출기초 없는 추정금액을 반영 후 당 해연도에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제출 받는 방식으로 순수기부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표 1]과 같이 연도별 순수기부금 예산편성 대비 집행액을 보면 2017년에는 전년 이월액 100백만 원을 포함하여 편성(125백만원)하고 32,887 천원(DDDD프로그램 등 3건)으로 30%을 집행하였다. 2018년에는 전년 이월액 90백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140백만원)하였으나 집행액이 없다.

[표 1] 연도별 순수기부금 세출예산편성 대비 집행액

(2019. 8.31.현재/ 단위 : 천원)

연도별	2017		2018		2019		비 고
구분	예산액	집행 금액	예산	집행 금액	예산액	집행 금액	
금액	125,000 (이월액100,000 포함)	32,887	140,000 (이월액90,000 포함)	-	50,000 (이월액 미포함)	_	

한편 2019년에는 전년이월액은 미반영하고 신규 기부금모금 예정액 50,000 천원을 예산편성하고 '2019년 ●●●● 세부추진계획'(□-1648 : 2019. 5.22)를 수 립하고 [표 2]와 같이 2건의 40,000천원 상당의 사업계획중이며 2019. 9월 감사 일 현재 집행액은 없어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 등의 목적을 위해 기부금을 모집 하고도 사업추진에 소홀하였다.

[표 2] 2019년 순수기부금 사용계획

(2019. 8.31.현재/단위 : 천원)

사업명	시기	예산액	사업확정여부	비고
2019 ◀ ◀ ◀ ◀ ◀ ■ 로젝트	2019. 9월~11월	25,000	확정	
ㅁㅁ ㅁㅁㅁㅁ ㅁㅁ ㅁㅁ 기부금사업	2019.11월~12월	15,000	미정	

2. 기부금의 여유자금 수익관리 소홀

「인천문화재단 정관」제23조에 재단의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당해연도 집행예정액이 아닌 여유자금(기부금)은 금리조건 등이 유리한 것을 선택해 금융기관에 적정기간을 예치하여 수익을 창출하여야 한다.

인천문화재단 ○본부 □팀은 [표 1]과 같이 연도별 기부금 이월액은 2016년 말 기준 약 9천만 원, 2017년 199백만 원, 2018년 231백만 원이 이월하였다.

그러나 2019. 8월말 기준 보유중인 총 263,770천 원은 보통예금 통장(연 0.1%)에 이월액 포함한 251,868천 원과 기업자유예금(1억원 미만 연 0%)에 이월액 포함한 11,902천 원의 금액을 예치하고 있고 기부자용 입금통장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연간 약 100백만 원에서 약 200백만 원에 상당하는 여유자금을 별도의 통장에 관리하지 않고 연이율 0% 또는 0.1%에 보통예금 통장에 예치함으로써 수익관리에 소홀하였다.

[표 3] 기부금 통장내역(기부자용 입금과 여유자금)의 이자발생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이자발생일자	잔고	이자액(세후)	비고	
			2,863		
	2016.12.17.	31,781	29		
	2017.06.17.	100,587	199	연0.1%이자	
□은행 □	2017.12.16.	222,686	408		
(보통예금)	2018.06.16.	211,184	690		
(32 0 11 11)	2018.12.22.	229,314	802		
	2019.06.22.	228,548	735		
	2019. 8. 31.	251,868			
	2016.12.26.	10,948	_		
	2017.12.29.	3,300	_] - 1억원 미만	
☑은행 (기업자유예금)	2018.12.28.	9,302	_	연 0%	
	2019.07.04.	11,902	_		
	2019. 8. 31.	11,902			

3. 조건부 지정기부금 성과보고서 관리 소홀

「인천문화재단 기부금품 관리 및 운영규칙」제9조·제10조 제2항에는 조건부 기부금 수혜자가 지원 사업수행에 있어 위법성 또는 교부신청서 내용의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기 교부된 기부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고, 조건부 기부금의수혜자는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 종료후 30일 이내에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 조건부 기부금사업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출증빙자료 사본 일체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표 4]의 2017년 조건부 기부금 사업 정산 총 9건중 (사)⑪⑪는 운영금 2,200천원 지원 받았으나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조건부 기부금사업 성과보고서' 와 지출증빙을 미제출하였고 갑(문화예술강좌) 등 4건은 18,254천원 상당의 기부금을 지원 받았으나 성과보고는 제출하고 지출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지정기부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데 소홀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시정] 2017년 미제출된 조건부 기부금사업 성과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사본 일체 등을 제출받아 당초 목적대로 사용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전년도에 순수 기부금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당해 연도에 기부금 모집 취지에 맞게 집행하시고 ② 기부금의 여유자금 발생시 수익을 철저히 관리하시 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하자검사 미실시

기 관 명 인천문화재단

관계부서 ◇팀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시행령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 3. 하자검사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이하 "정기하자검사"라한다)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이하 "하자만료검사"라 한다)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인천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제67조에 따르면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지침, 해석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시정)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에 대한 정기하자검사와 하자만료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선금지급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문화재단

관계부서 ◇팀

내 용

「지방회계법」제35조 규정에 따르면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 여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으로 또는 개괄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이나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3호에 따르면 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 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제2절 선금의 지급 - 3.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 라. 잔여 이행기간의 계산' 규정에 따르면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같은 예규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제2절 선금의 지급 - 4. 채권 확보 - 가. 채권확보 방법 - 1) 보증서 제출'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나.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규정에 따르면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다. 보증기간'규정에 따르면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인천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제67조에 따르면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지 침, 해석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문화재단에서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선금 지급 1건, 이행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금 지급 5건, 선금 지급 시보증서 미징구 4건, 채권확보 시 보증 ·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 미확보 12건, 규정에 맞지 않는 보증기간 11건 등 선금 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주의) 선금 지급 시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런번호 6]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기 관 명 인천문화재단

관 계 부 서 ◇팀

내 용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지방공기업법」제19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등록, 각종허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은 별표1과 같다고 규정하고있다.

[별표 1]

매입대상	매입기준	비 고
1. ~ 3. 생략		
4. 건설공사도급계약(「건설산업기본법」) 용역계약, 물품 구매· 수리·제조계약 (자치단체가 전액출자·출연법인의 계약체결 포함)	대금청구 금액의 2/100 (다만, 계약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함)	

※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호에 따르면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징구의무자는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대금을 청구할 때에 매입필증을 징구하되, 대금을 분할하여 청구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징구하며, 연간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이나 분할 청구시 200만원 미만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출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 연간계약 체결시 총계약금액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전액을 징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의 상환은 제8조제3항에 따른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일시 상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이 아닌 자가 착오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상환개시일 이전에 중도상환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문화재단에서는 각종 계약체결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징구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ㄱ 등 3건에서 매입기준액보다 총 100,000원을 과소 징구하였으며, ㄹ등 8건에서 총 1,080,000원을 미징구하였다.

[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현황 - 과소징구

(단위: 원)

æ	연 회계			지역개발채권	<u> </u>		
연 번	연도	계약명	대금	적 정 매입액	실 제 구입액	차액	비고
		총 계				100,000	
1	2017년	٦	36,210,000	720,000	680,000	40,000	
2	2018년	L	8,000,000	160,000	120,000	40,000	
3	2019년	С	9,500,700	190,000	170,000	20,000	

[표 2]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현황 - 미징구

(단위 : 원)

연	회계	게시대	+1) ¬	ズ	 권	มา	
연 번	회계 연도	계약명	대금	적 정 매입액	실 제 구입액	차액	비고
		총 계				1,080,000	
1	· 2017년	긛	2,600,000	50,000	0	50,000	
2	2017연	П	2,060,000	40,000	0	40,000	
3	- 2018년	日	9,800,000	195,000	0	195,000	
4		人	9,625,000	190,000	0	190,000	
5		0	9,000,000	180,000	0	180,000	
6		太	9,400,000	185,000	0	185,000	
7		え	2,500,000	50,000	0	50,000	
8		7	9,600,000	190,000	0	190,000	

조치할 사항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시정)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징구할 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징구해 주시고 과소 또는 미징구한 경우에는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인천문화재단

관계부서 □팀

내 용

1. 예산이월 부적정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행정안전부)의 'Ⅱ. 예산편성의 원칙 - ④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계속비, 예산의 이월, 세계잉여금의 세입 이입 등이 있고 예산의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의 '이월예산 집행상 유의사항'에 명시이월된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다시 사고 이월할 수 있지만 사고이월사업의 재사고이월은 불가 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인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명시이월된 사업이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어 재이월해야 될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단에서는 [표 1]과 같이 명시이월된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집행잔액을 이월할 때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로 재차 이월하였다.

[표 1] 명시이월의 재이월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이 월	구 분	재이월액 (2018 → 2019)	사 유	
<u></u> ○팀	7	2017 → 2018	명시이월	924,141		
O B	'	2018 → 2019	명시이월	924,141		
 △팀	L	2017 → 2018	명시이월	E 07E	위탁사업	
△ ∃	L	2018 → 2019	명시이월	5,875	정산확정 및 . 반납통보 지연	
	Е	2017 → 2018	명시이월	97.021		
© 	L	2018 → 2019	명시이월	87,031		

자료: 인천문화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2. 잉여금 등에 대한 예산편성 소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Ⅱ. 예산편성의 원칙 - 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사업수입, 잉여금, 출연금, 출자금, 이월금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운영경비, 사업비, 예비비, 기본재산 적립, 보조금 반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매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함이 원칙이다.

재단 「정관」제28조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연도 운영비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재단「재무회계규정」제22조에는 결산결과 발생한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수입은 사업종료 시 정산하여 미지급금,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세출예산에 보조금 반납금으로 편성하여 국가 등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세입세출예산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다음연도 세입예산 편성시 반영하여 결산결과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나 [표 2]와 같이 결산액과 다음연도 예산반영액과의 차액이 발생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잉여금 등 연도별 결산 및 예산편성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결산액 (A)	다음연도 반영액(B)	차액 (A-B)	결산액 (A)	다음연도 반영액(B)	차액 (A-B)	결산액 (A)	다음연도 반영액(B)	차액 (A-B)
 일반	순세계 잉여금	18,071	20,000	-1,929	547,984	547,985	-1	1,517,204	1,517,204	_
회계 	국시비 반납금	242,877	357,068	-114,191	120,133	212,300	-92,167	1,354,071	647,500	706,571

자료: 인천문화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3.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세출예산과목 과목해소'에 따르면 행사·홍보비에 부서연찬회 관련 경비는 편성 불가하며 「지방 출자·출연기관예산집행 기준」에 행사·홍보비는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과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무료 봉사 행사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고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재단에서는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면서 [표 3]과 같이 행사 참여자 및 출연진의 식비로 집행하는 등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3] 행사운영비 부적정 집행내역(식비)

(단위: 원)

연 도	행 사 명	집 행 액	비고
2018	2	1,423,000	
2018		695,500	
2018	Н	280,000	

자료: 인천문화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주의) 앞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등 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하시기 바라며, 담당자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동일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런번호 8]

인 천 광 역 시 개 선 요 구

제 목 법무·노무 자문 관련 규정 미비 등

기 관 명 인천문화재단

관계부서 □팀

내 용

인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노무 등 자문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법무법인(변호사), 노동법률사무소(노무사)와의 자문계약을 2019년부터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법률고문 위촉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송대리 위임 관련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이하 "의결안"이라 한다)을 2013. 1. 21. 의결하고 전 공공기관에 권고하였다.

의결안에 따르면 법률고문 변호사 위촉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공모방식만으로 위촉이 곤란한 경우 관련 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며 장기간의 위촉을 제한하는 등 기관별 조례 또는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률고문을 공개모집하거나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고문료 등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도의 지급기준1)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법인 등과 법무·노무 등 자문을 위한 계약을 위해서는 공모 방식(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에 추천 의뢰), 연임제한, 자문료 등 지급기준이 포함된 내부규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 후 관련 제도를 공정 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2019년 재단 조직 및 사업 규모의 확대에 따라 법무·노무 관련 사안 발생시 전문적이고 합법적인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및 노동법률 사무소와 법무·노무 자문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관련 내부규정 없이 자의적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 1년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매월 30만 원의 정액자문료를 법무법인 등에 지급함으로써 자문 활동의 공정성·투명성제고에 소홀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개선) 법무·노무 자문계약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촉방식, 연임제한, 자문료 지급기준 등이 포함된 자문 관련 규정을 제정하시고, 자문 활동 시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1) [별표 1]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고문료 등 지급기준

구분	지급액	비고
정액고문료	월 20만 원	
자문료	건당 10만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
회의수당	회당 10만원 이하	법무담당관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하여 지급

[일련번호 9]

인 천 광 역 시 시정·개선 요구

제 목 재산 및 물품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문화재단

관계부서 ◇팀

내 용

1. 재산 등 변동관리 및 보고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60조에 2년 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인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정관 제23조에 재단의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재단 「재무회계규정」제54조에 대표이사는 재단의 모든 재산과 물품을 각 호의 관계대장에 등록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60조제2항에 회계 업무 담당 팀장은 재산과 물품의 정확한 수량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정기조사는 연 1회, 수시조사는 필요할 경우로 정함으로써 재산의 변동관리 및 보고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재단 「재산관리규정」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수익 및 임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재단은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재산 및 물품에 대한 실사를 통하여 현물과 장부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재산의 망실 또는 훼손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재산 등의 변동 관리와 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단에서는 [표]와 같이 2016년 재산실태조사 및 정기재물조사 실시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 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표] 정기재물조사 등 결과

(단위: 개)

연도별	장부상수량	재	재물조사 결과 상		태	비고		
인포걸	37373	실사량	초과품	부족품	활용품	불용대상	비ᅶ	
2016	2,519	2,511	_	8	2,457	54	재산실태조사 실시	
2017			미실시					
2018		미실시						

자료: 인천문화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2. 불용품 처리 부적정

공유재산법 제75조에 따르면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재단「재무회계규정」제59조에 물품관리관은 물품이 노후 또는 훼손되어 사용가치가 상실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해당 물품을 불용 결정하고 매각ㆍ폐기ㆍ증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인천아트플랫폼 스튜디오의 공연예술분야 시 지원 등을 목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였던 비품에 대하여 ○ 사업 추진에 따라 비품 사용이 공간 운영에 적합 하지 않다는 이유로 2017. 1. 18. 인천아트플랫폼에서 ◇팀으로 불용처리 협조 의뢰하였고, 2017. 2. 20. ◇팀에서 불용물품에 대하여 타 부서 소요조회를 실시 하였다.

그러나 ◇팀에서는 불용 결정에 대한 대표이사의 승인 절차를 생략한 채소요조회를 실시하였고 이후 매각 등 처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감사일현재까지 어떠한 후속 절차 없이 ○○ ○○ 총 8개 중 일부는 재단의 보안실이나휴게실에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분해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16년도 정기재물조사 실시 결과 확인된 불용대상(파손 및 고장 등) 총 54건에 대하여 불용처리 등 조치 없이 인천아트플랫폼 등 재단 청사 외 건물의 지하창고에 분산하여 보관·방치하는 등 불용품 처리 및 관리에 소홀하였다.

3. 내부규정 개정 필요

공유재산법 제5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이하 "물품 수급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야 하며, 해당 연도에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려는 예정 수량 및 소요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재물조사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내부규정에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고 정수물품에 준하는 재단 중요물품에 대하여 매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함으로써 물품에 대한 수요·공급의 적정한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했으나 감사일 현재 재단관련규정에는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정기재물조사의 경우도 2년마다 한 번씩 실시가 아닌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어 과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관계로 상위법령과 부합되는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0조, 재단 「재무회계규정」제60조 및「재산관리규정」제10조에 따라 정기재물조사와 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등의 변동관리와 보고를 철저히 하고, 현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불용물품 처분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재단 「재무회계규정」의 경우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과 정기재물조사 실시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0]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문화재단

관계부서 000000

내 용

[표] 공유재산 사용 · 수익허가 현황

시설명	허가면적	사용자	허가기간	허가목적	계약방법	비고
0000000	107 m²	А	2018. 11. 13.~ 2020. 11. 12.(2년)	서점 및 카페	공개입찰	
"	3 m²	В	2018. 11. 24 ~ 2020. 11. 23.(2년)	자판기 설치(2대)	수의계약	

자료: 인천문화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1. 손해보험(공제) 중복가입 및 보험료 등 미부과

인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공유재산인 "〇〇〇〇〇〇〇"을 인천광역시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본 시설에 대하여 매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 공제에 가입하고 그에 따른 공제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재단에서는 ○○○○○○ 시설의 일부를 서점 용도로 개인에게 사용·수익 허가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받는 자는 계약기간 중 대부자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인천광역시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부받는 자는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대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재단과 사용자 간의 대부(사용료)계약서 제6조에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사용자인 A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재물종합보험을 가입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선박 등 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손해보험은 소유권에 따른 보험 가입이 원칙이므로 소유주인 지방 자치단체 또는 수탁자인 재단이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후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허가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그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 건물 전체에 대한 영조물배상 공제에 가입하였으면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개별로 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중복 가입이 되었으며, 사용허가 면적에 대하여 재단에서 부담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부과하지 아니하고 재단과사용자가 각각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어 불필요한 재정 지출이 발생되었다.

2. 사용 · 수익허가 계약 체결업무 소홀

재단에서는 ○○○○○○○ 내에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 내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감사대상기간인 2016년부터 2019년 감사일 현재까지 총 2회 계약을 체결하였고 1회차 계약기간은 2016. 11. 24. ~ 2018. 11. 23.로, 2회차 계약기간은 2018. 11. 24. ~ 2020. 11. 23.로 하였다.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기간 종료가 도래하면, 기존 사용자가 계약 연장 또는 갱신을 요구할 경우 내부검토를 통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재계약을 진행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신규 공개입찰을 통하여 사용자를 선정하게 된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1회차 계약기간이 종료될 시 기존 계약의 연장 검토 또는 신규 입찰을 진행하여 적정한 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했다.

그러나 2018. 11. 23. 당시 재단과 사용자 모두 기존계약이 종료됨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9년 3월경 담당자가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여 기존에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와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을 2018. 11. 23.로 소급적용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소홀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시정) ○○○○○○에 대하여 이중으로 납부되고 있는 공제금 및 손해보험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의 연장 또는 갱신, 종료 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 관계법령 상 절차를 확인하여 재계약 체결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